##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430

발의연월일: 2025. 1. 10.

발 의 자:김종민・이수진・복기왕

홍기원 • 윤종오 • 민병덕

임미애 • 이재관 • 김영배

고민정 · 김승원 · 한창민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임명절차 지연 등으로 인한 헌법재판관 공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음.

헌법재판관 공백 상황 발생 시,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한 유효성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바, 해당 논란과 갈등을 해소하고 헌법재판소의 안정적 운영으로 국민의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제도 개선과 대안 마련이 필요함.

이에 후임재판관 임명절차는 퇴임예정 재판관 퇴임 3개월 전에 개시하도록 하고,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 헌법재판관공백을 최소화하여 헌법재판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안 제7

조).

법률 제 호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후임재판관 임명절차는 퇴임예정 재판관 퇴임 3개월 전에 개시하도록 한다.
- ④ 재판관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법이 정 한 연임의 임기 기한을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재판관의 임기) ① 재판관	제7조(재판관의 임기) ① (현행과
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	같음)
할 수 있다.	
②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	② (현행과 같음)
다.	
<u>&lt;신 설&gt;</u>	③ 후임재판관 임명절차는 퇴
	임예정 재판관 퇴임 3개월 전
	에 개시하도록 한다.
<u>&lt;신 설&gt;</u>	④ 재판관은 임기가 만료되거
	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에도 후
	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임기
	를 연장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법이 정한 연임의 임기
	기한을 초과할 수 없다.